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

는 것을 말한다.

3. "현장 소방활동 대원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소방항공기 사고, 소방차 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말한다.
4. "현장 소방활동 대원준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대원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5. "소방차 교통사고"란 현장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현장대원사고 등"이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7. "아차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현장대원준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8. "소방공무원 순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9. "소방공무원 공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부상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10. "사망"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 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11. "중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12. "경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13. "부상신고"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14.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5.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16.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7. "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8.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9.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0. "현장안전담당"은 현장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비상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1. "신속동료구조팀"이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을 말한다.

22. "현장 안전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기술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23. "개인보호장비 등"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의 안전장비를 말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이 훈령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현장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훈령을 준용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계획) ① 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5조(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사무분장) ①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소방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

는 현장대원사고 등의 발생,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③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은 별표 1의 소방청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을 준용한다.

제6조(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① 소방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 및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의 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한다.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안전 관리책임자와 이 규정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은 별표 1을 따른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시 현장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임무 수행 시 타 업무와 겹침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방서의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3.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4.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5.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6.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7.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8.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9.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현장안전담당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2.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보건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3.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4.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5.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에서 현장안전점검관과 다른 대원들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끼, 헬멧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과 현장안전담당(이하 "현장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8조(현장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현장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지정된 현장안전담당자의 부재 등 별표 2에 따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현장안전담당자의 지정 확인)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담당 지정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현장안전담당자가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제10조(현장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제9조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 등 단위별 근무교대 및 현장 소방활동 복귀 시 안전관리교육

2.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 교육
4.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5.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2.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3. 개인안전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4.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5.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6.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에서 안전에 관한 신체적·정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과목을 개발·편성(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제4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은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부터 이수한다.

1. 신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최초로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과목·내용·방법·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2조(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에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

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다.

③ 중앙 또는 지방 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신입교육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관서에 배치된 신입 소방공무원은 소방관서의 장이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제13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① 제11조제2항의 현

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 소방학교장이 실시한다.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이 훈령 제1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현장 소방활동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하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참여식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업무로 전보된 경우 신규보직 적응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이 관련 업무의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이하 "현장 관련 훈련"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관련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폭염, 폭설, 폭우 등 기상여건 등으로 현장 관련 훈련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관련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 하거나 훈련 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17조(안전의식 고취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①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붕괴·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 등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이후 별표 4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장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소방장비의 점검·관리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경보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장비의 점검·관리는 소방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소방장비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이 훈령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장비별 점검기준 등에 따른다.

제21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소방공무원은 현장 소방활동 및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안전장비 등을 착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에게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운용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① 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운행기록장치)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 화생방 대응차
 2. 소형사다리차
 3. 재난지휘차
 4. 구급차
 5. 화재조사차
 6. 조명배연차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제24조(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 소방활동 중지 등) ① 현장 소방활동 대원은 현장 소방활동 중에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 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지휘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을 중지시키고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사고 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또는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장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① 현장대원사고 등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활동에 임했던 동료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현장 소방활동을 중지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장 소방활동이 가능하

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기 전까지 출동대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시정조치)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이 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제29조(실태점검) ①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등은 올바른 안전의식의 정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설문조사 등을 실태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등은 폭염, 수난구조 활동, 벌집제거 활동 등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등은 실태점검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통회의로 실시할 수 있고, 소통회의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실태점검 방법 등) ①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이 각각 정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실태점검을 시행할 경우 소방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점검결과는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태점검 결과에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제32조(현장보존 등) ①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 등의 허락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고대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소방장비의 고장 또는 불량으로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거·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3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서(이하 ‘사고조사보고서’라 한다)는 인명피해 인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마다 각각 작성한다. 단, 동일사고는 같은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는 시·도 단위로 부여한다.

②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대원의 성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②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이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담당공

무원과 함께 조사하여 작성하고,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 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과 소방장비관리 담당공무원이 함께 조사하여 작성한다.

③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④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의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장 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조사를 보류할 수 있다.

1. 3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 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본부

2. 2명 이하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서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의 개요, 사고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개선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순직 등 사고의 조사) ① 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

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편성 및 임무는 이 훈령의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방지대책의 수립)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제38조(사고조사보고서의 활용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 조사결과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다른 소방관서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관련 대원의 조치)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대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대원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의 조사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사고의 통계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현장 소방활동 안전 제안제도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 제안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① 소방공무원은 안전사고의 예방
을 위하여 현장대원준사고 및 아차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 등"이
라 한다)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한 사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
로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②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

(제5조 및 제6조 관련)

1. 소방청

구 분		담 당 부 서	협 조 부 서
총 괄		보건안전담당관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현장대원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		국립소방연구원	
유 형 별	소방활동(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활동	화재대응조사과	
	소방활동(구조)	구조과	
	소방활동(구급)	119구급과	
	생활안전활동	구조과	
	소방장비운용(소방차 포함)	장비총괄과	

※ 기타 활동, 교육·훈련은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를 정하고 소방관서의 경우 소방청의 담당부서를 준용하여 업무를 정한다.

2. 소방서의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구 분		소방서
상설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보건안전복지팀 소속 과장 또는 보건안전업무를 담당(과장급)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보건안전복지팀 팀장 또는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팀장급)
	현장안전점검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서의 현장소방활동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비상 설	현장보건안전관 리 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현장안전담당	현장 소방활동 시 보건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공무원

※ 소방서 이외의 소방기관은 소방관서의 장이 위 표를 준용하여 정한다.

현장안전담당 지정 (제8조제1항 관련)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3.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6.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제17조 관련)

1. 현장 소방활동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2. 모든 안전사고 및 현장대원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3. 현장지휘관은 지휘와 안전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4.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임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5. 대원의 생명은 국민의 생명과 똑같이 중요하고, 현장지휘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6. 현장지휘관은 소방활동 안전규정을 숙선수범하여 준수한다.
7. 현장지휘관은 차분하게 대처하고 침착하게 지휘한다.
8. 지휘체계를 통하여 재난현장의 현장지휘관과 모든 대원은 연결되어야 하며, 대원들의 안전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9. 현장 안전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안전 문제점과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10. 현장 위험요소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공유하여 유사 재해를 대비한다.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

(제18조 관련)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는 임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행동이 최선임을 명심한다.
2. 현장 소방활동은 항상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3. 현장지휘관은 대원 임의의 독단적 행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원을 철저히 장악한다.
4.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대원은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전 대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전파한다.
5. 흥분·당황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6. 각종 기계·장비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명확히 알고 안전조작에 숙달토록 한다.
7. 자기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확보한다는 의식과 자세를 가진다.
8. 복장과 개인안전장비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한다.
9. 안전확보의 전제는 강인한 체력과 기력에 있으므로 평소에 체력관리와 기력연마에 최선을 다한다.
10. 사고사례는 심층 분석하여 산 교훈으로 삼고 현장 소방활동에 적용한다.
11. 현장대응 활동 시 최소 2인 1조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한다.
12. 현장지휘관은 대응 우선순위 및 전략 선택 시 현장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대원투입 등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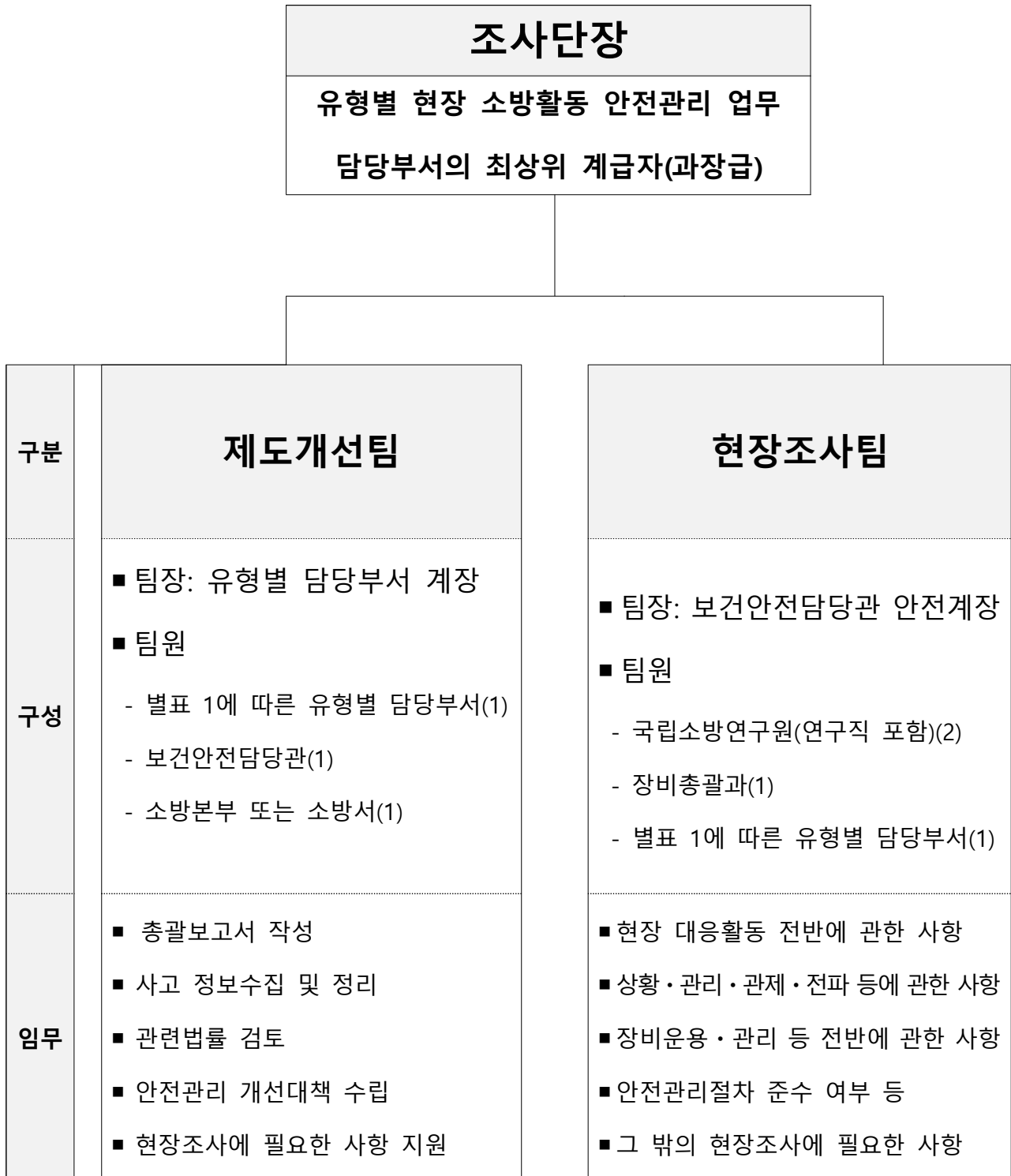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제19조 관련)

단계별	현장 안전관리 확인요소
출 동 및 현장도착 단 계	1. 장비 점검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 장비점검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 소방차량 안전조치
	2. 상황판단
	▶ 재난상황 및 대상물정보 파악
	▶ 보유자원 현황(인력·장비 등) 파악
	▶ 임무부여 및 점검
	3. 유관기관 협조요청
	▶ 협조요청 실시
	▶ 유관기관의 안전조치
현장활동 단 계	4. 현장안전평가
	▶ 개인안전장비 착용사항 점검
	▶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
	▶ 장애물 확인 및 제거
	5. 소방활동 현장 출입 통제
	▶ 안전거리 설정
	▶ 통제선 설치 및 출입 통제
	6. 현장 안전관리
	▶ 인원·장비관리
	▶ 위험요인 지속 파악 및 안전조치
	7. 부상방지
	▶ 부상예방노력
	▶ 신체 이상반응 보고
	8. 위험요인 전파 및 안전조치
	▶ 위험요인 전파
	▶ 현장활동 중지 및 대피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현장철수 단 계	9. 인원·장비점검
	▶ 인원·장비점검
	▶ 대원 건강상태 확인

조사단 편성 및 임무표

(제36조제3항 관련)



- 비고 : 1. 사고의 특성에 따라 편성기준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소방관서의 장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관리번호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				
연도-번호					
계획명					
소방활동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기타[]
분야	대응[]		훈련[]		기타[]
의견수렴절차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여부 (0,X)	응답내용	
	배치 · 훈련 장소에 대한 사전 확인				
	사전 안전교육				
	개인별 직무표				
	인력 · 장비 현황				
	안전점검표				
	대원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첨부자료 (계획서 등)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연도-번호	

1. 대상 계획

계획명	
소관부서	

2. 평가 의견

※ 평가 기준

- 배치 · 훈련 장소에 대한 사전확인 ▪ 사전 안전교육 ▪ 개인별 직무표
- 인력 · 장비 현황 ▪ 안전점검표 ▪ 대원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3. 개선요구 사항

4. 참고 사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 . .

000과 (단)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

훈련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훈련장소	시 · 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m/sec ☐ [선택] 강수량 ()mm ☐ [선택] 적설량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훈련분류 (유형별)	화재진압	☐ 주택 ☐ 아파트 ☐ 건물 ☐ 공장 ☐ 차량 ☐ 기타()										
	구조	☐ 차량 ☐ 수난 ☐ 산악 ☐ 기계 ☐ 붕괴 ☐ 추락 ☐ 기타()										
	구급	☐ 질병 ☐ 사고부상 ☐ 기타()										
	생활안전	☐ 벌집제거 ☐ 동물포획 ☐ 안전조치 ☐ 기타()										
	교육 등	☐ 소방전술 ☐ 장비조작 ☐ 긴급구조 ☐ 기타()										
위험정도	☐ 긴급(위험상황) ☐ 잠재긴급(잠재적 위험상황) ☐ 비긴급(위험하지 않은 상황) 판단이유											
훈련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발생장소가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주용도, 상호, 건물구조, 연면적 등 관련 정보 포함)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개인보호장비 착용	☐ 공기호흡기 ☐ 방화복 상의 ☐ 방화복 하의 ☐ 안전모 ☐ 보호장갑 ☐ 안전화 ☐ 방화두건 ☐ 기타()											
훈련사진 및 현장안전판단	사진						<위험요소에 대한 기술> ※ 소방활동 훈련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원들과 대화를 통해 판단한 후 기술					
	사진											
관련조치	※ 현장안전판단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											
작 성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기타 () [필수] 기온 ()℃ [필수] 풍속 ()m/sec [선택] 강수량 ()mm [선택] 적설량 ()cm													
기상특보	[]해당없음 []주의보 []경보 종류 []강풍 []호우 []대설 []한파 []태풍 []폭염 []기타													
활동분류 (대분류)	소방활동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화재조사 []기타()											
	소방활동 이외		[]생활안전활동 []소방지원활동 []교육 · 훈련 []기타()											
활동분류 (중분류)	화재진압		[]주택 []아파트 []건물 []공장 []차량 []기타()											
	구조		[]차량 []수난 []산악 []기계 []붕괴 []추락 []기타()											
	구급		[]질병 []사고부상 []기타()											
	생활안전		[]벌집제거 []동물포획 []안전조치 []기타()											
	소방지원		[]행사지원 []급수 []배수 []풍수해 []시위 []기타()											
	교육 · 훈련		[]소방전술 []장비조작 []긴급구조훈련 []기타()											
활동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사고장소가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주용도, 상호, 건물구조, 연면적 등 관련 정보 포함)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활동유형	[]출동 중 []현장 소방활동 중 []잔화정리 중(화재) []이송 중 []귀소 중 []철수 중 []교육 중 []훈련 중 []기타()													
사고원인 (직접적)	[]떨어짐(추락) []넘어짐 []갈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찢림 []감전 []폭발·파열 []무리한 동작 []이상온도 접촉 []화학물질누출·접촉 []빠짐·익사 []원인불명 []감염 []기타()													
사고원인 (간접적)	불완전한 상태 []개인보호장비의 결함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의 결함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기타()						불완전한 행동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안전평가 미실시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개인보호장비 오조작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 오조작 []불완전한 자세, 동작 []기타()							
개인보호장비 착용	[]공기호흡기 []방화복 상의 []방화복 하의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기타()													
부상정도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부상부위	[]머리 []목 []흉부 []복부 []팔 []손 []엉덩이 []다리 []발 []신경계 []내장기관 []기타부상()													
부상병명	[]화상 []염좌(삔짐) []골절 []탈구(빠짐) []열상(찢어짐) []절단 []찰과상(긁힘) []출혈 []좌상(타박상) []자상(찢림, 베임) []통증 []염증(끓음) []파열(터짐) []감염 []기타()													
사고조치	[]현장응급처치 []병원이송 []기타()													
공상신청	[]해당없음 []신청예정 []기타()						인정 []인정 []미인정 ※ 결과완료 후 기입							
이전사고 횟수	[]1회 []2회 []3회 이상()회													
보호조치	[]해당없음 []연가 []공개(특별휴가포함) []내부상담 []외부상담 []기타()													
안전교육이수	[]이수 []미이수 ※ 본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													
기본정보 (부상대원)	성명													
	소속		()본부				()소방서				()			
	성별		[]남성 []여성											
	생년월일													
	계급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이상											
	최초임용일													
	해당업무경력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업무구분		[]운전요원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기타()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2)

현장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부상사진 (개인정보보호처리)			
사고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피해현황	구분	합계	소방		민간	
	인명피해	사망()명	사망()명	사망()명		
		중상()명	중상()명	중상()명		
		경상()명	경상()명	경상()명		
	부상신고()명	부상신고()명	부상신고()명			
재산피해	()천원	()천원	()천원			
조사자 의견	※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기타 () [필수] 기온 ()℃ [필수] 풍속 ()m/sec [선택] 강수량 ()mm [선택] 적설량 ()cm											
기상특보	[]해당없음 []주의보 []경보 종류 []강풍 []호우 []대설 []한파 []태풍 []폭염 []기타											
활동분류	소방활동		[]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 [] 화재조사 [] 기타()									
	소방활동 이외		[]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 교육 [] 훈련 [] 기타()									
	활동개요 (구체적 기술)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활동유형	[]출동 중 []현장 소방활동 중 []이송 중 []귀소 중 []기타()											
사고유형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속 []2차사고 []기타()											
도로종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기타()											
도로형태	단일로		[]횡단보도상 []횡단보도부근 []터널안 []교량 위 []기타()									
	교차로		[]교차로 내 []교차로 부근									
노면상태	[]포장 []비포장 []건조 []습기 []결빙 []적설 []기타()											
도로선형	[]직선 []곡선 []기타구역()											
도로경사	[]오르막 []내리막 []평지											
사고차로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이상()											
차량행동	[]직진 []좌우회전 []턴 []후진 []앞지르기 []진로변경 []주/정차 []기타()											
상대차종	[]해당없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기타()											
사고책임	[]소방 []상대방 []쌍방		과실비율		소방()% : 상대방()% ※ 결과완료 후 기입							
사고유발요인	인적 유발요인				차량적 유발요인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해당없음 []전방주시태만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 []차량조작잘못 []심신건강상태 불량 []보행자 부주의 []불명 []기타()				[]해당없음 []제동장치불량 []조향장치불량 []엔진장치불량 []타이어불량 []기타()				[]해당없음 []선행불량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야간 시계불량 []노상 장애물(방치물, 차량 등) []노면 미끄러움(결빙, 적설 등) []불명 []기타()			
보호장비	[]해당없음 []안전벨트 []안전모 []기타()											
선택자조치	[]해당없음 []안전운전 유도 []위험상황 파악 []기타()											
부상정도	[]해당없음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부상부위	[]해당없음 []머리 []목 []흉부 []복부 []팔 []손 []엉덩이 []다리 []발 []신경계 []내장기관 []기타부상()											
사고조치	[]현장응급처치 []병원이송 []기타()											
공상신청	[]해당없음 []신청예정 []기타()				인정 []인정 []미인정 ※ 결과완료 후 기입							
이전사고횟수	[]1회 []2회 []3회 이상(회)											
보호조치 (예정포함)	[]해당없음 []운전적성정밀검사 []연가 []공가(특별휴가포함) []상담 []기타()											
교통안전교육	[]이수 []미이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보험처리유무	[]미처리 []처리 []기타() ※ 결과완료 후 기입											
벌금 등 납부	[]해당없음 []벌금 []과태료 []기타() ※ 결과완료 후 기입											
기본정보 (부상대원 또는 운전요원)	성명											
	소속	()본부				()소방서				()		
	성별	[]남성 []여성										
	생년월일											
	계급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이상										
	최초임용일											
	해당업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업무구분	[]운전요원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기타()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2)

현장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부상사진 (개인정보보호처리)			
사고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피해현황	구분	합계	소방	민간		
				피해자	구급이송환자	
	인명피해	사망()명	사망()명	사망()명	사망()명	
		중상()명	중상()명	중상()명	중상()명	
		경상()명	경상()명	경상()명	경상()명	
부상신고()명		부상신고()명	부상신고()명	부상신고()명		
재산피해	()천원	()천원	()천원			
※ 구급이송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만 포함 (부상신고→경상이상, 경상→중상이상, 중상→사망인 경우)						
조사자 의견	※ 사고 및 안전위험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맑음 []흐림 []비 []눈 []안개 []기타 () [필수] 기온 ()℃ [필수] 풍속 ()m/sec [선택] 강수량 ()mm [선택] 적설량 ()cm					
기상특보	[]해당없음 []주의보 []경보			종류	[]강풍 []호우 []대설 []한파 []태풍 []폭염 []기타	
사고종류	[]현장대원준사고 []아차사고					
활동분류 (대분류)	소방활동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화재조사 []기타()				
	소방활동 이외	[]생활안전활동 []소방지원활동 []교육 · 훈련 []기타()				
활동분류 (중분류)	화재진압	[]주택 []아파트 []건물 []공장 []차량 []기타()				
	구조	[]차량 []수난 []산악 []기계 []붕괴 []추락 []기타()				
	구급	[]질병 []사고부상 []기타()				
	생활안전	[]벌집제거 []동물포획 []안전조치 []기타()				
	소방지원	[]행사지원 []급수 []배수 []풍수해 []시위 []기타()				
	교육·훈련	[]소방전술 []장비조작 []긴급구조훈련 []기타()				
발생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발생장소가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주용도, 상호, 건물구조, 연면적 등 관련 정보 포함)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					
활동유형	[]출동 중 []현장 소방활동 중 []잔화정리 중(화재) []이송 중 []귀소 중 []철수 중 []교육 중 []훈련 중 []기타()					
사고원인 (간접적) ※ 복수선택 가능	불완전한 상태 []개인보호장비의 결함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의 결함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기타 ()			불완전한 행동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 미실시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개인보호장비 오조작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 오조작 []불완전한 자세, 동작 []기타()		
사고개요 및 예방대책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관련사진						
기본정보	성명					
	소속	()본부	()소방서	()		
	성별	[]남성 []여성				
	생년월일					
	계급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이상				
	최초임용일					
	해당업무경력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업무구분	[]운전요원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기타()				